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양 선 희* · 김 기 성**

<차례> _____

I. 서 론

III.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될 주요조항

II. 법제정의 경위와 쟁점

IV. 결 론

주제어 : 금융소비자보호, 보험업법,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동일기능-동일규제, 규제차익, 6가지 판매의무,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분쟁조정절차

<국문초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 3. 24. 제정되어 2021. 3. 25. 시행(전면시행은 2021. 9. 25)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시행령도 금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처에 회부되었다. 아직 규칙이나 고시 등 하위규범까지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주요골격은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전통적으로 금융회사의 종류(업태)에 따라 금융소비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방식이 부당한 규제차익과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기능 - 동일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오늘날 금융소비자보호가 G-20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고 각국에서 매우 강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소기의 제정목적 달성을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공통규정을 제정하는 국가는 아주 드물다. 우리 법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통일법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전반적으로 규율하지만 특히 보험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험업법의 많은 조항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 왔고 동시에 그 규제내용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에서도 특히 보험산업에 미칠 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이 법의 제정이유와 배경을 정리한다. 이 법의 제정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이 법의 해석원리와 법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이지만 2020.12.말 현재 이미 개정안이 7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둘째, 본고는 특히 보험업계가 관심을 갖는 6가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위의 금지,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에

*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강사, 법학박사(Ph.D)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논문접수일(2021.01.31), 심사개시일(2021.02.10), 게재확정일(2021.02.25)

대하여 살핀다. 셋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내용이 강화된 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 본다. 현재도 금융분쟁의 약 60% 이상이 보험 계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하위규범이 완비되고 그 후 법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I. 서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준수할 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법률 제17112호)되어,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다만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용은 2021년 9월 25일 시행).¹⁾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라는 원칙의 도입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였다. 결국 ‘누가 팔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팔았느냐가 주요 기준이 되고, 그동안 업태별로 각 개별 금융관련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²⁾ 관련 규제를 단일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권역별 규제체계하에서 문제로 지적된 법의 충돌,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을 방지하여

1) 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3. 5. 자. 1면.

2)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은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이며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라고 정의하면서 규제에 차이를 두고 있다(법 제2조 제8호 내지 제10호).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법 제2조 제9호 단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법 자체가 중요내용의 상당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을 통하여 충실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³⁾ 받았다.

마침 2021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입법예고안’) 이 의결됨에 따라 시행령도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⁴⁾

시행령에서는 진입규제 규정에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을 신설하였으며,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6가지 영업행위 규제(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의 적용 범위, 세부 내용, 판단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내(대출성 14일, 보장성 15일, 투자성 7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 등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조정위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징벌적 과징금 및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감독제재 기준을 마련하였다.⁵⁾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골격이 드러나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본고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미 2012년에 정부안이 발표된바 있지만,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이견과 반발로 2020년에 이르러서야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무수한 논쟁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인 쟁점들은 상당히 수용되었다고 본다. 본고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논의의 경과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 법의 제정이유와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이 법의 해석에서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나아가 법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이 법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이고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2020년 12월말 현재 이미 이 법의 개정안이 7건이나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상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 둘째,

3) 김선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공, 시행령이 관건이다”, 『헤럴드경제』 2020. 2. 13.자.

4)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 2021. 1. 18. 자. 1면.

5)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0.28.~12.6.]”, 2020. 10. 28. 자. 1면.

6) 개정안에는, 현재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본고는 특히 보험업계가 관심을 갖는 6가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의 금지,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핀다. 이 법은 모든 금융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금융권은 이 법의 시행에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은 은행, 증권, 여신 등 다른 금융권과 크게 다른 계약구조와 산업상 특색이 있어 일반 금융권과 다른 엄한 규제를 받아 왔다. 또 장기계약인데다가 불완전판매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어 상법 보험편 외에 새로운 계약해지권의 행사 문제가 큰 현안이 될 전망이다. 다른 금융권에 비하여 보험업계가 상품의 특성, 판매 채널, 분쟁 등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내용이 강화된 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한다. 현재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금융분쟁의 약 60% 이상이 보험계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본고는 위의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환하고 있으나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업행위의 법 위반 경우로 확대하자는 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불법적 행위를 할 경우 철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로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발의되었다. 또 최근 법인인 보험대리점(GA)이 대형 규모로 성장에 따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에 소속 보험설계자가 모집 과정에서 발생시킨 금융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보험업법 제102조에 유사한 보험모집위탁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조항이 보험업법(제283조)에 있는데, 대리점이 직접배상책임을 지거나 보험자로부터 구상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 1999년부터 판매되었다(石田滿, 『保險業法』, 文眞堂, 2017, 647-651頁).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대리점과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점이 지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며 이에 따라서 설계사라든가 대리점 조직에서는 결국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 책임 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의 일종인 Errors & Omissions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민약에 고객과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보험회사는 담보 범위 내에서 고객이 입은 손해와 소송비용과 합의금까지 합해서 보상한다. 한편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일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39조). 개정안 중에는 일반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하자는 것이 있다.

II. 법제정의 경위와 쟁점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경위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약관거래라는 점에서 약관규제법은 계약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준칙(제42조 이하)을 규정하였다. 특히 보험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구성이 복잡하여 보험자와 보험소비자 간에 정보격차가 크고 판매 경로도 여러 가지이며 그 사행계약성·장기계약성으로 인하여 분쟁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상법은 1991년 개정시에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조항(제638조의3)과 보험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 조항(제663조)을 신설하였고 보험업법에서도 모집 관련 준수사항으로 설명의무(제95조의2), 적합성원칙(제95조의3), 모집광고관련 준수사항(제95조의4)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관련 업법에서 업태에 따라 각기 규정하는 방식은 규제사각지대와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통합하여 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보험의 경우 투자상품의 성격이 강한 변액보험에 대하여 적합성원칙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되었는데 후에 보험업법에 적합성원칙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변액보험을 적용대상으로 삼아 문제를 해소한 바가 있으나 이와 같은 입법적 해결이 있기까지는 해석론이 나뉘는 등 다소의 혼란이 있었던 것과 같다.⁷⁾ 금융위원회는 동일상품이나 서비스는 당해 상품의 판매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당해상품의 기능에 착안하여 동일위험에 대하여 동일한 영업행위준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에 따라 ⁸⁾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착수하였고 2012. 1. 31. 동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제안 이유를 금융업의 점영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7) 김선정, “변액유니버설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에 대한 재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금융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3, 95~127면.

8) 이를 대변하는 한국개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발표 주요 내용』 (2010. 6. 30), 2면.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권러 분쟁 발생시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2012년 법안의 입법제안이유가 2020. 법제정의 제안이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겠다. 당시 법안의 주요 내용도 ①기능별규제체계의 도입, ②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6대 원칙을 규정,⁹⁾ ③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사업자가 규제위반을 통하여 형성한 부당이득 환수,¹⁰⁾ ④ 금융회사와 판매채널 간에 사용자책임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⑤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등 신규업자 규제,¹¹⁾ ⑥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8대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되었다.

2. 입법지연 이유

2012년 법안이 법제화에 실패 한 이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의원 발의 입법안이 이어졌다. 생각건대 2012년 당시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었고 우리 사회도 KIKO사태, 파워인컴펀드사태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이르지 못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비자보호의 일반원칙들은 각 금융관계법에 산재되어 있었고 이질적인 업권을 단지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굳이 통합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약했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논의시에 대부분의 입법론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개편 논의를 함께 하여¹²⁾ 이에 반대하는 측과 대립하는 양상을

9) 당시 법안과의 차이는 당시 예컨대 대출실행시 적금가입을 강권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과 같은 '구속성상품계약체결금지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 부분이 '불공정계약의 금지로 표현되어 다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긴 점이다.

10) 당시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의 30%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11)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업권별 모범규준으로 규제되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대출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규제를 적용하고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상회하는 약탈적 대출 등 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금융사에 사용자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나 대출모집인 규제는 지금도 모범규준으로 규율되고 있다.

12) 이런 논의는 단순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직의 창설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전전성규제에 국한하고 영업행위규제를 떼어 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보인 것도 추진동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본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법률명 때문에 이 법안이 주는 인상은 매우 강렬하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치부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통합법 형식을 취할 것인지 개별법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각국의 금융산업의 현상과 금융법제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각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입법례를 볼 때 반드시 통합법제로 가는지는 의문이다. 통합법제는 영국의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2000), 호주의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2001) 정도이고 역사상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장 강조되던 당시의 미국,¹³⁾ 일본을¹⁴⁾ 비롯 대다수 국가는 여전히 개별법에 따르고 있으며 호주에도 개별법이 남아있다고 한다. 실사 기능별(risk based) 규제를 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지도 의문이다.¹⁵⁾ 이와 같은 세계적 입법 추세를 볼 때 과연 새로운 법의 제정이 기존법률들의 수정·보완에 비하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지는 지켜 볼 일이다.¹⁶⁾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6년 10월 25일 이후 5건이 발의되었는데,¹⁷⁾ 정부위원회는 2019. 11. 25.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하기로 하였다. 계속 폐기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에 이르러 제정된 것은 그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추진력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강한 반박논리를 펴왔다. 금융감독원,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 및 감독체계의 현황과 시사점」(2010.2), 65~75면.

- 13) 미국의 경우 보험규제는 변액보험상품처럼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규제하므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두 모아 기능별 규제를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2010년 도드-프랑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연방보험회사무소(FIO)가 생겼다고 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관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John S. Pruitt et al., Insurance Regulation Answer Book, 2017 ed., Practising Law Institute, pp.213-214, p.221.
- 14) 일본의 경우 보험상품판매에 보험업법상의 설명의무(제300조의2), 정보제공 및 의향파악·확인 의무(제294조의2),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정보제공규정의 적용이 있으나, 금융상품을 횡단적으로 모아 규제하지는 않는다(尾形祥, “生命保險募集における説明義務”, 「生命保險論集」 No.213,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 2020, 193頁). 다만 일본에서도 기능적·횡단적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측면에서 보다는 IT기술에 따라 종래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분해하거나 통합하여 제공하는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金融廳 金融政策審議會 金融制度スタディグループ, 「機能別・横斷的な金融規制體系に向けた検討」, 金融廳, 2018, 2~7頁.
- 15) Andrew D. Schmulow & James O'Hara,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Australia”, IAFICO Book Project No.1.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NC, 2018, pp.25-27.
- 16) 김선정,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체계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원, 2010, 154~160면.
- 17) 2016년 10월 25일, 2016년 12월 27일, 2017년 3월 9일, 2017년 4월 7일, 2017년 5월 23일 등.

Ⅲ.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될 주요조항

1. 서언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6가지 판매 원칙이 도입되었다. 이 중 일부는 보험업법에 도 존재하는 것이었고 일부는 새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험업법에 존재 하던 원칙도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그 내용이 강화 되었고 그 위반의 효과가 엄해졌다. 또한 규제위반시 보험계약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법 제57조) 제도가 도입되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에 대한 제재의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다.¹⁸⁾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던 조정제도도 옮겨 왔는데 조정이탈 금지제도 등 그 내용이 고객측에 유리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 보험업법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들이 신설 되어 사후규제에서 사전규제, 즉 행위 규제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변경하여 소비 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드러냈고 보험관련 규제들이 비교적 엄 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 사항 중 보험업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내용과 법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사항에 대 해 검토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2. 업태별 분류가 아닌 상품 및 서비스의 기능별 분류로의 전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했다(법 제3조). 또한 영업행위 규제의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구분하고(법 제4조),¹⁹⁾ 영업행위시 준수하여야 할 금융상품

18) 법무법인(유)세종, 뉴스레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시행 예정 - 보험회사의 신속한 대응 필요”, 2020, 1면.

19)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제9호 내지 제12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되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된다.

제4조(정의)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판매원칙을 공통기준과 금융상품별 기준으로 체계화하여²⁰⁾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전면 도입하여 종래 업권별 규제에 따른 법의 저축, 규제의 공백이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 차이(regulatory arbitrage)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입법적 의의가 있다.²¹⁾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금융상품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법에 따른 보험상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금융상품을 열거하고²²⁾ 그와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추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²³⁾ 동 법과 대통령령에 열거된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동 법과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내지 서비스 등 법적용 대상과 보험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예금성 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호는 예금성 상품을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20) 정순섭, “최근 20년간 금융규제의 변화”, 「BFL」 제10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50면.

21) 손영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경제법학회, 2020, 73면.

2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3) 양승현, “금융상품의 분류와 보험 관련 이슈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KIRI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2020, 11면.

것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3조 제1항은 은행법상 은행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 및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대출성 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는 대출성 상품을 은행법 등에 따른 대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3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계약대출도 대출성 상품에 포함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다.²⁴⁾

(3) 투자성 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호는 투자성 상품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자본시장법상의 신탁계약 및 투자일임계약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24)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보험약관대출에 대해서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이 아닌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계약 대출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연체에 따른 부담이 추가로 발행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법의 입법 취지상 보험해약금을 한도로 이루어지는 보험약관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성 상품에 포함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4) 보장성 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4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보험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보장성 상품으로 분류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행위 준수사항 등 동일한 규제대상이 된다.

입법예고안 제3조 제4항은 동법 제3조 제4호의 보장성 상품의 유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계약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의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제는 일정한 단체에 속한 구성원들 사이에 불확정한 사고에 대비한 상호부조를 말하는데,²⁵⁾ 통설과 판례는 공제의 법적 성격이 보험업법상 상호보험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²⁶⁾ 상법 제4편(보험)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되므로(상법 제644조)²⁷⁾ 공제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4호는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을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이 조합 형태로 유사보험을 제공하고 있고²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계약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제1항)로 특정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금융상품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계약을 보험계약과 유사한 계약의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입법예고안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²⁹⁾

25)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21면.

2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8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12926 판결 등.

27) 여기서 상법의 적용을 배제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무엇 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해당 공제의 근거법이 규정하는 바와 해당 공제제도의 설립목적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 예컨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의 보험으로 보험법규정의 상당부분이 준용된다(김선정, “학교안전공제의 특성과 시행령의 위법성-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 월간생명보험 제458호, 생명보험협회, 2017, 28면).

28) 최창희·홍민지, 「공제보험 현황 조사」, 조사자료집, 보험연구원, 2020, 16면.

29) 신용협조합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조합이 대리점 역할을 하는 형태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에 따라 공제규정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6가지 판매원칙의 적용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6가지 판매원칙, 즉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원칙을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예금 및 대출,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종전에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각각의 금융상품에 따라 6대 판매원칙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규율하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6대 판매원칙 전부가 적용된다(법 제17조~제22조). 따라서 보험회사는 판매원칙에 따라 보험소비자에게 설명 및 확인할 내용, 확인 받을 서류 등 내부 절차나 내부 지침의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준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 적합성 원칙(법 제17조)

1) 의의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2007. 8. 자본시장법에 처음 명문화하였고 2010. 7. 23. 보험업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업법상 변액보험만이 적용대상이었으나,³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까지 적합성 원칙을 확대 적용하였다.

2) 보험 관련 쟁점

현행 보험업법 제9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변액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모집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3 제1항).³¹⁾

30) 양승현·손민숙,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2019, 14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이라고 규정하며 적합성 원칙을 확대적용 한다.³²⁾

입법예고안 제11조 제2항은 보장성상품 적용범위를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 공제료를 말한다)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에 반영되는 금융상품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원칙을 작용하는 바, 변액보험 외에 일반보험상품에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에는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69조 제2항³³⁾하고,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위법계약의 해지권 등을 신설하여 제재수준을 크게 강화하였다(법 제47조).

한편 최근의 보험거래는 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³⁴⁾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맞춤형

31) 조동관, “보험계약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369면.

32) 보장성 상품은 대부분 사고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므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목적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의 목적에 적합한 보장성 상품을 권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일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76면.

3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 하거나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이하 중략)

3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FAQ답변[1차]」 (2021. 2. 18.), 7면.

상품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나 소비자가 특정 기준(거래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경우 등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예시하고 있다. 단순한 ‘검색’단계를 ‘권유’의 청구로 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은 연령, 자산과 소득 등 재산상황, 가입목적 등 정보를 제공할 것이어서 보험가입이 비록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여전히 적합성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보장성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적합성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안 된다.

(2) 적정성 원칙(법 제18조)

1) 의의

적정성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을 의무이다. 적정성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진 요청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적정하지 아니하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보험 관련 쟁점

보험업법에는 적정성 원칙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보험상품 판매에 대하여도 적정성 원칙이 도입되었다. 규제대상인 보장성 상품의 범위는 입법예고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변액보험, 자산연계형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담보대출〔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 증권 등 짧은 기간 내 시장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에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 제4항은 적정성 판단 보고서,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 하였다.

(3) 설명의무(법 제19조)

1)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유형별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적용대상 상품은 전술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적용되지 않은 예금성 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설명해야 할 공통사항은 동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간·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2) 보험 관련 쟁점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중요 사항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⁵⁾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³⁶⁾는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주계약

35) 보험계약 체결시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638조의3, 보험업법 제95조의2, 약관규제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김선정,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 「월간생명보험」 제472호, 생명보험협회, 2018, 32면.

36)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 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4.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류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등 중요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4-35조의²³⁷⁾는 변액보험계약의 투자형태 및 구조,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보험기간 종료이후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조건 및 보장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목5)의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입법예고안 제13조 제2항은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 또는 피보험자(계약 체결 이후 위험을 보장받는 자를 말한다)가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및 같은 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각각 위반한 경우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상법」 제647조에 따라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보험료 중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제3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7) 보험업감독규정 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영 제42조의2제1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변액보험계약의 투자형태 및 구조
 2.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3. 보험기간 종료이후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조건 및 보장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저축성 보험계약의 적용 이율
 5. 유배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6.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7.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 리된다는 내용과 사업비 수준
 8. <삭제 2019.12.18.>
 9. 65세 이상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65세 시점의 예상보험료 및 보험료의 지속납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7>
 10. 제9-4조의2 각 호의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중 제1호, 제3호의 정보 및 보험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이 동意的한 경우 제7호의 정보를 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에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14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법률상 규정된 설명서 외에 핵심설명서의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기존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상책임과 달리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고(제44조)³⁸⁾ 설명의무 위반시 해당보험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가 가능한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였다(제47조).

(4)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1)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출성 상품 등의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보험 관련 쟁점

법 적용 대상은 대출성 상품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인 바,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대출도 대출성 상품에 포함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상품에 해당된다. 불공정영업행위 유형은 ① 대출성 상품 등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③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④ 금융상품과 관련한 연계·제휴서비스를 관련하여

38)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21. 9. 25.] 제44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축소·변경하는 행위, 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대출시 차주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제110조의2의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행위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5조 제6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체 점검, 민원 또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법 위반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영업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57조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 법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 해지도 할 수 있어 보험업법 보다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5) 부당권유행위의 금지(법 제21조)

1)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법은 부당권유행위 유형을 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④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2) 보험 관련 쟁점

전술한 부당권유행위 유형 중 ②, ③, ④의 금지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다.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적용대상 상품 중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①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②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1조 제5호). 보장성 상품에 적용되는 두 개의 금지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으로³⁹⁾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사항은 대부분 보험업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었다.

(6)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규제(법 제22조)

1)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금융기관 법률과 유사하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와 그 내용, 자율규제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⁴⁰⁾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협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고의 내용에 있어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그 업무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동조 제3항)과 금지하는 행위(동조 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에 관한 광고란 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②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의⁴¹⁾ 2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2) 보험 관련 쟁점

광고시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포함사항은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및 금융상품의 내용인데, 보험업법 95조4에 규정하고 있는 광고관련 사항 중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및 금융상품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추가되었다. 이 중

39) 원일연, 전계논문, 87면.

40)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20, 19면.

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계 FAQ답변, 9면. 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

금융상품 유형별 적용사항 중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⁴²⁾ 광고시 금지행위는 보장한도,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로 보험업법 제95조4 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회 등에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동조 제6항),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전에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광고심의를 하였다면, 입법예고안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3호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장성 상품·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심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심의를 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은 다른 보험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내용과 구성이 복잡하여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크다.⁴³⁾ 그동안 흡쇼핑에서의 보험상품 판매가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불완전판매의 상당 건수가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허위, 과장 광고에서 유인된 점, 심지어 현혹적인 보험상품의 이름도 문제되었던 만큼 보다 신중한 광고행위가 요구된다.

4. 사후 권리구제제도

금융상품의 판매원칙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법 위반시 위법계약해지권(법 제47조), 판매제한명령(법 제49조), 손해배상청구 관련 증명책임 전환(법 제44조), 징벌적 과징금(법 제5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청약철회권(법 제46조), 금융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소송중지제도(법 제41조), 소액분쟁조정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법 제42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의 열람요구권(법 제28조) 등이 도입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이미 7건이나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대부분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42) 원일연, 앞의 논문, 90면.

43) 김선정, “보험광고의 적정화 방안”, 『추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17, 85~104면.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내용으로 법 위반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⁴⁴⁾ 분쟁조정 등의 편면적 구속력 신설 등이⁴⁵⁾ 포함되었다.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및 보완이 예상되는 바, 보험업 관련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관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⁴⁶⁾

5. 위법계약해지권

(1)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위법계약해지권을 신규 도입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의무, 설명의무 등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여 위법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⁷⁾ 이는 정보 불균형이 심한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시켜 주는 제도로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존재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

법 제47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업권과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조항인데,

4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공청회를 마쳤다. 집단소송은 종래의 증권집단소송과 달리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적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법률안이 2건(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징벌 배상법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법무부는 모든 상인의 상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는 상법 제66조의2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김선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한 지정토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20. 12.), 77~90면; 김선정, “진술서”,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20. 11), 41~51면.

45) 이 문제에 대하여는 김선정, 전계 금융감독원 보고서, 114~125면.

46) 양승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보험법리뷰」 제7호, 보험연구원, 2020, 11면.

47) 6가지 영업행위 준수사항 중 광고 관련 준수사항(제22조)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위법계약의 범주가 매우 다양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있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감독당국은 이 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⁴⁸⁾ 해지의 효력은 '계약의 소멸'이므로 해지가 곧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해지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550조). 그러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기까지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지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소비자에게 돌려 줄 금전이 아니다.

금융소비자법상의 계약해지권은 일종의 법정해지권이라 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일방적 행사에 의하여 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것이 마치 청구권인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

(2) 보험 관련 쟁점

고객의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때에 보험업계가 가장 우려하였던 조항 중의 하나이다.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만 보면 해지권은 형성권은 아니며 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제2항의 해지권은 본래의 해지권, 즉 형성권이라고 보게 된다. 입법예고안 제37조 제1항은 위법계약해지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사 불가하므로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37조 제2항은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과 최초 보험료 납부일 또는 대출금 등 최초지급일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까지로 위법계약해지 요구의 행사기간을 한정하고 있다.⁴⁹⁾

4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계 FAQ, 8면.

위법계약해지권은 후술하는 청약철회권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고(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예고안 제37조 제5항은 동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금융소비자가 ①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해지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빠진 경우, ③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④ 금융소비자가 계약 후 발생한 자신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계약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취한 경우, ⑥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⑦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법위반의 범위가 넓고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금융분쟁의 60% 이상이 보험분쟁인 점, 보험상품의 약관이 복잡하고 판매채널이 다양한 점 등에 더하여 해지기간의 범위가 넓어 장기간 불안정한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37조 제8항은 동법 제47조 제3항의 위법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수수료, 위약금 등을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상품의 종류 및 특성, 해지 시점 및 금융소비자의 손실 정도나 손실 사유 등에 따라 반환 범위의 확정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상법 제648조) 문제는

49)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상법 제662조)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금융 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임의해지(상법 제664조)라고 볼 수도 없다. 만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는 해제가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보험계약이 제47조 위반이자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무효사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러 금융계약이 계속적 계약이지만 특히 보험의 경우는 쌍방의 채무가 쌍무적으로 전연관계를 이루며 지속되고 보험금의 지급보장 문제가 얽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⁵⁰⁾ 시행령의 입법예고 중에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예컨대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권보다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금액의 경우 다양한 사실관계를 일반화하여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속히 고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 감독 당국의 입장이다.⁵¹⁾ 다만 처음 법안이 제안되었던 당시에 우려되던 문제들, 예컨대 적합성 원칙 위반의 경우 각 업무의 프로세스마다 그 위반을 따져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적이고 최종적으로 원칙위반의 계약인지를 따져야 하는지, 범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⁵²⁾ 시행령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

50) 금융상품별로 해지의 효과를 따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이상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위법계약해지권 소고”, 『은행법연구』 제10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7, 228면.

5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개 F&Q, 8면.

52) 이 문제를 제기한 이상훈, 앞의 논문, 223-116면.

6. 판매제한명령권

(1) 의의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 49조). 발동요건은 입법예고안 제40조 제2항에서 ① 금융상품의 구조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금융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②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위임하는 등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은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를 명령 전 고지하고, 명령 발동 전 기업이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⁵³⁾

판매제한 명령권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제도이다.

7.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1)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법 제44조 제2항 본문). 손해배상의

5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2020. 12. 24. 자, 5면.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전환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향후 분쟁 조정 절차에도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⁵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어느 정도로 판매원칙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입증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보험 관련 쟁점

보험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법 제19조 제2항은 민법 상 입증 원칙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수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은 설명의무 위반사실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법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는 향후 분쟁조정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의 내용, 적절하고 효과적인 설명방법, 설명의 유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설명의무가 허위, 왜곡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만큼 허위, 왜곡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핵심설명사항의 결정, 설명방법의 설정, 주기적 유효성 검증 등에 대해 법적 기준 이상으로 더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손해배상 증명책임 전환의 적용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⁵⁵⁾ 발의된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에 대해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로 전환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⁵⁶⁾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는 소송남발로 인한 안정성 저해 및 보험회사의 응소비용 전가 등 규제준수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보험회사는 설명의무 이행 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응용하여 적용함으로써 핵심설명사항의 결정, 설명

54)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에서는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55) 최명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20, 181면.

56)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장별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등>, 2020. 7. 13.

방법의 설정, 주기적 유효성 검증 등에 대해 법적 기준 준수 이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⁵⁷⁾

8. 징벌적 과징금

(1) 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주요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법제57조)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다. 입법예고안 제42조 제3항은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 등”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보장성 상품은 금융소비자로 받은 보험료, 예금성 상품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 받은 금액으로 정의하였는데,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정하여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진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2) 보험 관련 쟁점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관계법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금으로, 형벌인 몰수·추징·벌금,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보험업법 역시 보험회사가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은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⁸⁾⁵⁹⁾

57) 이순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의 의의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금융브리프」, 29권 9호, 한국금융연구원, 2020, 13면~14면.

58) 황현아·백영화·권오경,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218-11」, 보험연구원, 2018, 22면.

59)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회사,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보험회사의 전속 대리·중개업자(보험중개사 제외함)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보험회사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여 보험업법 보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었다. 여기서 징벌적이란 우리 민법이 기본적으로 실손해배상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벗어난 배상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말이다. 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위반자에 대해서 보험업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⁶⁰⁾

발의된 개정안은 당초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가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⁶¹⁾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아직 동 제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추가적 배상에 대한 기대와 소송대리인의 이익 추구 목적이 맞물려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협을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을 적립하게 된다 면 그 부담이 종국적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입법안에서 다소 완화되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업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61) 위 전자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2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9. 청약철회권

(1)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다(법 제46조). 입법예고안 제36조 제1항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에 한정),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금융상품별로 적용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데,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등 지급일로부터 14일,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내 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보험 관련 쟁점

보험업법 제104조의4 제1항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장성 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보험업법의 규정과 동일하다(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또한 청약이 철회된 경우 보험회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46조 제3항 제1호). 입법예고안 제36조 제9항은 금전·재화·용역의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재화 등의 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분쟁조정절차 강화

(1) 의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소송 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가 도입되어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금융소비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들이 강화되었다.⁶²⁾

분쟁조정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2) 보험 관련 쟁점

종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57조에 규정되었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들은 삭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절차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분쟁조정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분쟁조정에서 적용된 기준 및 결정금액 산정방식이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⁶³⁾

1) 소송중지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62)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0. 3. 17. 자.

63) 법무법인(유) 율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율촌 뉴스레터, 2020년 5월호, 2020.

2) 조정이탈금지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는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분쟁가액이 2천만 원 이내의 소액분쟁사건에 관하여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⁴⁾⁶⁵⁾ 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⁶⁶⁾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된다.⁶⁷⁾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② 분쟁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하는 만큼 조정안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불수락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없어,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해당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상품판매업자

6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65) 위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0. 3. 5. 자, 8면.

66) “재판상 화해”란 당사자 간의 화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변론조서에 기재한 것을 의미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67) 이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소액분쟁사건 조정안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2020. 8. 12.

등은 법령에 따른 거절사유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28조). 현재는 분쟁조정신청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분쟁조정 중 소제기 사건은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 그 동안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인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 금융회사는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자료 요구에 응할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의 법 제정으로 관련 근거가 비교적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⁶⁸⁾

IV. 결 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업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0여년 이상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입법이니만큼 그 의의를 다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의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분쟁 다발 상품인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담은 작지 않다. 법적용의 초기에는 다소 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현재 변액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적합성 원칙의 적용 범위를 변액보험,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며,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자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셋째, 주요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관련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와 금융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상품의 판매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의 발생 경위가 6대 판매규제에 해당할 경우 수반되는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담이다. 이에 보험상품 판매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유형을 상품별로 차별화하고, 판매과정에서

68) 원일연, 앞의 논문, 106면; 법무법인(유) 율촌, 앞의 뉴스레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수립하며,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사후 소비자 구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지방법 등에 대한 업무프로세스의 총체적 점검 및 컴플라이언스가 요구된다. 처음부터 도입이 논의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별개 입법 또는 상법개정안을 통하여 도입되는지를 살펴서 논의하며 될 것이다. 법률의 일부 불명확한 사항들은 시행령을 통하여 일부 해소 되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규칙이나 고시 등 법규범 또는 가이드라인이나 업권의 자율규제 등 갖가지 형식으로 법의 취지와 내용,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나가는 일이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및 논문

- 금융감독원,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 및 감독체계의 현황과 시사점」(2010.2).
-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 김선정, “변액유니버설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에 대한 재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금융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3.
- _____,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체계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원, 2010.
- _____,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 ”, 「월간생명보험」 제472호, 생명보험협회, 2018.
- _____, “보험광고의 적정화 방안”, 「추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17.
- _____,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한 지정토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20. 12.).
- _____, “진술서”,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20. 11).
- 손영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경제법학회, 2020.
- 양승현·손민숙,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2019.
- 양승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2020.
- _____, “금융상품의 분류와 보험 관련 이슈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KiRi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2020.
- 원일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20.
- 이순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의 의의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금융브리프」 29권 9호, 한국금융연구원, 2020.
- 이상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위법계약해지권 소고”, 「은행법연구」 제10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7.
- 정순섭, “최근 20년간 금융규제의 변화”, 「BFL」 제10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 조동관, “보험계약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 ”,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20.
- 최창희·홍민지, “공제보험 현황 조사”, 「조사자료집 2020-1」, 보험연구원, 2020.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기초서류 준수위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2018.
- 한국개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발표 주요 내용」, 2010.

2. 외국 문헌

- 石田滿, 「保險業法」, 文眞堂, 2017.
- 金融廳 金融政策審議會 金融制度スタディグループ, 「機能別・横斷的な金融規制體系に向けた検討」, 金融廳, 2018.
- 尾形祥, “生命保險募集における説明義務”, 「生命保險論集」No.213,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 2020.
- John S. Pruitt et al., Insurance Regulation Answer Book, 2017 ed., Practising Law Institute
- Andrew D. Schmulow & James O'Hara,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Australia”, IAFICO Book Project No.1.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NC, 2018.

3. 보도자료 및 기타

김선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공, 시행령이 관건이다”, 『헤럴드경제』 2020. 2. 13.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1차]」, 2021. 2. 18. 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 1. 31. 자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3. 5. 자.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0 3. 17. 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0.28.~12.6.] ”, 2020. 10. 28. 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2020. 12. 24. 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 2021. 1. 18. 자.

법무법인(유)세종, 뉴스레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시행 예정 - 보험회사의 신속한 대응 필요”, 2020.

법무법인(유)울촌, 뉴스레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020년 5월호, 2020.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대법원 www.scourt.go.kr/supreme/suprem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제처 <https://www.mole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www.lawmaking.go.kr>.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Abstract>

The Effects of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on Insurance Contracts

Yang, Sun Hee* · Kim, Ki Sung**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FCPA) was enacted on March 24, 2020, and go into effect on March 25, 2021 (full enforcement will be on September 25, same year). On January 13, the enforcement decree is also pass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lthough sub-norms, such as enforcement rules and public announcements by the FSC, have not yet been completed, it can be said that the main cont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FCPA have been established.

Traditionally, financial entities business activity regulation had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financial consumer depending on the financial companies' type. However, such a regulatory method result in unfair regulatory arbitrage and a blind spot for unexpected consumer protection. The FCPA, thus, introduced 'the same product-same risk- same regulatory principles.'

Toda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the most significant agenda of the G-20 summit. It is also a primary policy goal in each country. Considering the world's strong trend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enactment goal of the FCPA must be achieved successfully. Nevertheless, till now very few countries have enacted the act that applies uniformly to all financial sector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uniqueness of Korean law suggests that there will be many challenges to the law to be entirely operated to achieve its purpose.

* Lecturer, Dept. of Property Law, Seoul University, Ph.D.

** The Ph.D. Candidate in Law, Dongguk University.

The act generally governs various financial products and sectors,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ignificantly affect insurance contracts. In fact, many provis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ve been moved to the FCPA, and at the same time the duty of consumer prote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strengthen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FCPA's important provisions, especially on the insurance contract.

Firs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and the background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 will be summarized by examining the debates and discussions surrounding it.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enacting the act is meaningful. It will become a substantial standard when deciding the principles for interpretation of the act or when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the act in the future.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0, even before this act went into effect, seven revised bills are alread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is study is particularly focused on the six sales-principles which the insurance industry is especially interested in(include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principles of adequacy, the duty of explain,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prohibition against unfair and false labeling or advertising),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and punitive penalties and punitive damages.

This study also looks into the reinforced dispute mediation system.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originally was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transferred to the FCPA and became more powerful. Transferred and reinforced dispute mediation system is meaningful because the current situations that more than 60% of financial disputes are about insurance disputes.

After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act and regulations are all settled, the rational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will be made through active discussions between the academics and industries on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It is

also expected that, if necessar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made after the debates and discussions on the numerous issues that arise from the act.

Key Words :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surance Business Act, savings type product and protection type product, risk based regulation, regulatory arbitrage, six selling principles, right of termination to illegal contract, punitive penalty surcharges, punitive damages, mediation of financial disputes

